

○委員長 朴尙東 네, 우리 全潤構委員님, 財務局의 責任을 맡아 보셨기 때문에 이 內容에 대해서 意見을 한 번 주시지요.

○全潤構委員 意見보다도 그 金炯奎委員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렇습니까?

○全潤構委員 네, 타당성이 있으니까 可否를 한 번 물어서 決定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委員長 朴尙東 그러면 혹시 車在國委員이나 質疑 안 하신 委員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金炯奎委員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廣域議會는 檢査委員이 5名이고, 市·郡議會는 3人이라고 하는 制限性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2人을 서울市長이 推薦한다고 하면 서울市長의 立場을 봐서라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立場이 됐을 때는 이것은 일반 市·郡議會와 똑같은 그런 立場이 되어 버리는 그런 矛盾의 內務部의 條例案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래서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理由도 더 添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委員 안 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 關한條例案 第3條第1項 但書規定을 削除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하자는 修正動議가 發議되었습니다. 이 動議에 再請하십니까?

(「再請이요」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金炯奎委員 發議한 修正動議案은 일단 成立이 되었습니다.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修正動議案이 成立이 되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改議案을 내실 委員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執行部側도 양해를 하시고, 일단 委員들의 意見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會議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提出된 條例案은 일단 處理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炯奎委員이 修正動議하신 서울特別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 關한條例案 第3條第1項 但書規定을 削除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기 때문에 但書條項만 削除하고 原案대로 通過된 것을 可決합니다.

可決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결로써 선임한다.

② 의회 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기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감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감사기간중 선임된 감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감사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감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감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감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감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등의 사유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간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의회는 감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1.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3. 기타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제6조(감사위원의 직무) ① 감사위원은 시장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세입·세출 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위원은 시장으로 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위원의 결산감사 업무는 감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감사위원의 신분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7조(감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감사위원으로부터 결산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① 시장은 감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회의원의 보수등에관한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되 결산감사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감사개시일로 부터 감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감사 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위 촉 장

성명

귀하를 ○○년도 서울특별시 결산감사 위원으로 선임하였기.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인)

- 5. 서울特別市國家有功團體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6.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47分)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國家有功團體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과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지난 第53回 臨時會 會期時 서울特別市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곧바로 質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하는 委員 있음)

네, 兪相根委員님 말씀하시지요.

○兪相根委員 먼저번에 이 案件은 전부 質疑를 했고 答辯까지 듣고 한 事項이기 때문에 더 質疑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原案대로 通過시키는 것을 提議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지난 번에 우리가 質疑와 答辯을 다 들은 것입니다. 지난 번에 日程 調整 관계로 해서 이것을 금 會期로 留保를 시킨 것입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國家有功團體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국유공단체에대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委員長 朴尙東 다음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